

소음·진동과 환경분쟁

김 두 환

1. 서 론

산업의 발달은 풍요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따라 환경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는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이에 따라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경분쟁을 통계적으로 보면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환경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현황과 소음·진동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성격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성격은 피해 발생시 오염원인의 복잡성과 당사자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민원처리방식이나 당사자간의 접촉만으로는 분쟁해소에 한계가 있고, 사법적 분쟁 해결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적인 분쟁해결 방식의 장점인 공정성과,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 전문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인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필요하다.

환경분쟁은 상황의 재연성 곤란으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환경오염피해가 신체, 생활환경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속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있어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는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제기준의 준수여부와 무관하게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다.

3. 환경분쟁조정 현황

'91. 7. 19 ~ '09. 12. 31까지 총 2,647건을 접수하여 2,242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308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현재 97건을 처리 중에 있다.

피해원인별로 보면 처리된 2,242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1,922건(86%), 대기오염 152건(7%), 수질오염 66건(3%), 해양오염 9건(1%), 기타 93건(3%)이다.

발생지역별로 보면 서울 558건(25%), 경기 513건(23%), 인천 128건(6%)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1,199건으로 53%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1,043건으로 47%를 차지하며,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445건(20%), 4~6개월 1,013건(46%), 7~9개월 682건(30%), 10개월 이상 92건(4%)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5.5개월이다.

배상결정 현황별로는 배상결정 1,031건(46%), 중재합의 927건(41%), 기각 245건(11%), 기타 39건(2%)이며, 배상결정한 1,031건의 신청금액은 4,295억원, 배상 결정액은 406억원, 배상율은 9.5%이다.

(단위 : 건수, %)

조정(調整) 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 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2,242 (100)	1,031 (46)	927 (41)	245 (11)	39 (2)

처리형태는 재정사건이 2,1948건이며, 이중 배상결정은 1,031건(47%), 기각 243건(11%), 방음대책 등 13건(1%), 중재합의 906건(41%)이며, 조정사건은 48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21건(42%), 조정중단 26건(54%), 기각 2건(4%)이다.

합의율은 효력이 확정된 2,242건의 내용을 보면, 1,881건(84%)은 합의, 361건(16%)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 되었고, 2009년 상반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65건)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1심에서 판결된 29건 중 22건이 재정결과를 인용하였고, 불인용 7건 중 4건은 일부 인용, 전부 불인용은 3건에 머물러 재정결과가 재판

† 교신저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mail : iamkim@uw21.net
Tel : (000)000-0000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음진동 관련 주요 조정사례

가. 서울시 마포구 철도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사건개요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인과관계 검토 및 재정결과

- 이 현장의 발파는 플라즈마공법을 적용하여 최대 소음도 및 진동도가 각각 67dB(A), 47dB(V)로 평가되어 배상 기준치인 소음도 70dB(A), 진동도 65dB(V)에 미달하여 개연성을 불인정하였다.

- 건물피해에 대해서도 발파작업시 신청인아파트에서 최대 0.01cm/sec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기준인 1.5cm/sec에 미달하여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경기도 이천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사건

○ 사건개요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 국도 확·포장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한우의 성장지연, 증체량 감소, 육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을 상대로 피해배

상을 요구하였다.

○ 인과관계 검토 및 재정결과

- 도로공사시 장비사용으로 평가소음도가 50~69dB(A)로서 가축피해 발생가능 소음도(60dB(A))를 초과하고 있어 피해 개연성이 인정하였으나, 진동도는 33~56dB(V)로서 피해 인정 기준(57dB(V)) 미만이므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 소음·진동피해 개선방향

환경피해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종 민원, 협상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해원인이 소멸된 시점에서 현장 상황, 화약 사용량 및 사용 장비를 조합하여 분석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만족할 만한 조정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중장비 이외의 소규모 장비나 가설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실질적인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족으로 피해주민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례를 다양하게 모형화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중장비 이외의 장비에 대한 소음평가도 실시하여 실질적인 소음·진동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